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05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이용선 · 서영석 · 송재봉
강준현 · 안도걸 · 황 희
서삼석 · 김남희 · 한정애
유동수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을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를 지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소속 공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
- ④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증 촉탁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공증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이를 횡령·유용한 경우
3. 그 밖에 공증담당영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담당영사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증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공증담당영사의 지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p> <p><신 설></p> <p>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신 설></p>	<p>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소속 공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p> <p>③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를 지명----- ----- -----.</p> <p>④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p>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증 촉탁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공증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이를 횡령·유용한 경우

3. 그 밖에 공증담당영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③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